

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,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공익신고의 처리(안 제5조)
 - 공익신고 조사기간은 60일 이내, 조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
-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
(안 제6조, 제7조)
-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(안 제8조)
 -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관련 사항 심의는 충청북도 공직자윤

리위원회에서 심의

-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(안 제10조, 제11조)
-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(안 제12조, 제13조)
 -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사업 선정·지원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.
- 행정기관의 공권력만으로는 사회전반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.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.
- 다만, 본 조례안 제8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“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”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,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,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
안 1부 끝